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327

2023. 11. 30. 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30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감면 기한 연장 : 2023년 12월 31일 → 2026년 12월 31일
- **대상 조항** :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
 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2조)
 -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4조)
 -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5조)
 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7조)
 -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9조)
 -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(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·개정 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「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」에 따라 개정된 감면 조례의 내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 제2조 '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' 조문 등 6개의 일몰기한 도래 조문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

2022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규모(1년간)

관련 조	내 용	제정	세목	감면율	건수	감면세액(원)
합계					153	11,277,710
제2조	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	'15.05.14.	자동차세	100%	63	8,017,040
제4조	문화재 보호구역 감면	'15.05.14.	재산세	50%	3	834,070
제5조	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	'15.05.14.	재산세	50%	_	-
제7조	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	'15.05.14.	재산세	50%	_	-
제9조	시장현대화사업 감면	'16.05.12.	재산세	100%	_	-
제10조	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	'21.05.13.	재산세	50%	87	2,426,600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- 5. 토론요지
 - 없 음
- 6. 심사결과
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